

표 4

□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준(중등) □ (2025.02.28. 평정 시 기준)

공통 가산 점	순	평정 내용	월평정점	일평정점	상한점	비고			
	1	교육부장관 지정 연구·시범·실험학교 (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포함)	0.018	0.0006	1.00	※ 2022.04.01.부터 상한점 축소 시행			
	2	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	0.015	0.0005	0.50	※ 2022.04.01.부터 상한점 축소 시행			
	3	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	연 0.08	-	1.00				
	4	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가산점	연 0.1	-	1.00	※ 2016.12.30.부터 시행			
	공통가산점 계		-	-	3.50				
선택 가산 점	순	평정 내용	구분	월평정점	일평정점	상한점	합산 상한점	비고	
	1	보직교사	-	0.027	0.0009	2.00 (1.43)	2.00	()안은 '97.12.31.이전 경력에 대한 상한점임 *공단: '09.03.01.이후 경력부터 적용 ('09.02.28.이전 경력은 읍면/동 가산점 적용) 종전: '04.01.01.이후 적용된 상한점 차등 규정 폐지	
	2	교육전문직원	-	0.012	0.0004	0.75 (0.45)			
	3	도서·벽지 및 접적지역	가지역	0.045	0.0015	1.50	1.50		
			나지역	0.039	0.0013				
			다지역	0.033	0.0011				
			라지역	0.027	0.0009				
	4	농어촌, 공단 및 접경지역	면(읍면)	0.015	0.0005	1.50	1.50		
			읍(동)	0.012	0.0004				
			*공단	0.009	0.0003				
			접경	0.015	0.0005				
	5	특성화고(대안학교)	-	0.015	0.0005	1.00	(1.00)	()안은 공통가산점 포함 ※ 2022.04.01.부터 상한점 축소 시행	
	6	고등학교 근무	-	0.012	0.0004	0.60			
	7	산업수요맞춤형고교 근무	-	0.0081	0.00027	0.80			
	8	교육감 지정 연구·시범·실험학교 및 선도(중심)학교	도지정	0.015	0.0005	-	(1.00)	()안은 공통가산점 포함 ※ 2022.04.01.부터 상한점 축소 시행	
	9	담임, 순회, 파견, 겸임, 공동실습운영, 소체, 체전, 기능 대회, 영재교육, 다문화특별학급담당교사	시군지정	0.0075	0.00025				
	10	국제올림피아드 지도	-	0.021	0.0007	0.72	3.00	()안은 '07.12.31.이전 경력에 대한 평정점임	
	11	발명교실 지도	-	0.012	0.0004	0.72			
	12	청소년 단체 지도	-	0.006 (0.009)	0.0002 (0.0003)	0.64			
선택가산점 계			-	-	-	7.50 (6.50)	()안은 연구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을 제외한 점수임		
합계						10.00			

※ 위 평정 기준은 각 평정 시점 도달 이전에 관련 법령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음